

논산을 새롭게
시민을 행복하게

의안번호	제100호
------	-------

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23. 6. 8.

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00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6. 8.
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23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 상 일부부서 기능 조정
나. 지방자치법 전부개정(시행 2022.1.13.)에 따른 근거조항 현행화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사무소 폐지, 관련기능 자치행정과 이관
- 주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별도 사무소 구성 필요성 저하
- 서울사무소 기능(고향사랑기부제, 재경향우회 관리 등) 자치행정과 이관(시행규칙 내 별도 규정)
나.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현행화
(안 제8조, 안 제14조제1항, 안 제1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나. 예산조치 : 붙임과 같음
다. 기타사항
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[기획감사실-(2023. 4. 24.)]
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[복지정책과-13206(2023. 4. 21.)]
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[예산실-4869(2023. 4. 21.)]

4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3. 4. 28. ~ 5. 18. (20일 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5) 비용추계서 : 불입과 같음

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자치행정과(☎041-635-3046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홍보협력실은 홍보기획·언론홍보·뉴미디어홍보·서울사무소”를 “홍보협력실은 홍보기획·언론홍보·뉴미디어홍보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제113조”를 “제126조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제14조에 규정한”을 “규정한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법 제114조”를 “법 제127조”로 한다.

제19조 중 “법 제4조”를 “법 제5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만18세 이상 만45세”를 “18세 이상 45세”로 한다.

제19조의3제2항제1호 중 “만18세 이상 만45세 미만”을 “18세 이상 45세 이하”로 한다.

제20조제4항제1호 중 “만18세에서 만45세”를 “18세에서 45세”로 한다.

별지제1호서식 유의사항 3호 중 “만18세 이상 만45세 미만”를 “18세 이상 45세 이하”로 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자 치 행 정 과 장	송 홍 섭
	인 사 팀 장	박 승 현
	담 당 자	김 도 현 (7 4 6 - 5 2 3 3)

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10조(업무) ① (생략)</p> <p>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4조에 <u>제14조에 규정한</u> 소관사무를 수행한다.</p> <p>제14조(설치) ① <u>법 제114조</u>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9조(관할구역) <u>법 제4조</u>에 따른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 및 행정·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.</p>	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 <u>규정한</u> ----- -----.</p> <p>제14조(설치) ① <u>법 제127조</u>----- ----- ----- 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9조(관할구역) <u>법 제5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--	---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해당 없음

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해당 없음

나. 추계결과

○ 해당 없음

3. 작성자

자치행정과장 송 홍 섭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·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시·도지사는 그 조사·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, 기관별, 직급별,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
2. 유사·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,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④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해당 시·도와 관할 시·군·구간 또는 관할 시·군·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